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 ·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-140호(2012.10.29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 · 제3항에 의한 “건강보험 행위 급여 ·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”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-116호, 2012.9.14)를 붙임과 같이 개정 ·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개정고시문 및 신규조문대비표. 끝.

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보험국 공지사항 참조바람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유소영 차장 류향수 국장 최금숙

시행 : 보험 제 2012-598 (2012.10.29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

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4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ysy@kha.or.kr